부가가치세 면세의 의의

- 부가가치세의 면세는 부가가치세의 역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또는 사회·문화·공익 및 조세제도의 여러가지 정책 목적상 혹은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의 성격상 이러한 재화·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
- 면세사업자:
 - ①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안함.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의무 없음.
 - 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ㆍ납부, 사업자의등록,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등도 배제
 - ③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하는 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님
 - ④ 면세사업자는 거래상대방에 의하여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며, 그 당해 매입 부가가치세는 당해 거래의 원가에 가산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전가됨.
- 면세제도의 정책적 의의 :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님 그러한 재화나 용역을 사용 또는 소비하게 되는 최종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한 조치임
- 면세대상은 주로 일반국민들의 기초적이면서 필수적인 재화와 용역, 국민복리후생 및 문화용역과 기타의 공익용역 등에 국한하고 있으며 토지·노동·자본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본적인 생산요소에 대하여도 이론적인 측면으로 보아면세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면세효과

과세사업자 - 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		파계시하기	ત્રો
	А	В	면세사업자 계	Al
공급	100+10	200 + 20	320+0 ①	620+30
매입	_	100+10	220+02	320+10
	100+10	100+10	100+0	300+20 ③

- ① 위 사례의 경우 각 사업자의 부가가치 창출은 각각 100 이다. 따라서 면세사업자의 공급가액은 220+100=320이다.
- ②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지 못하므로 매입세액은 매입가액에 합산시킨다.
- ③ 부가가치 총액은 300이나 부가가치세액은 20이다. 과세사업자 A, B가 창출한 부가가치 100, 100에 대하여 각각 10, 10의 세액을 부과하였으나 면세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 100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탓이며 따라서 부분면세효과만 있는 것이다.

면세 적용대상 거래

1) 기초 생활필수품 및 용역

- ① 미가공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 포함)
- ②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비식용 농, 축, 수, 임산물(외산은 과세)
- ③ 수돗물(생수는 과세)
- ④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 ⑤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조특법 106조)
- ⑥ 연탄과 무연탄(유연탄, 갈탄, 착화탄은 과세)
- ⑦ 여객 운송 용역(항공기, 우등고속버스(일반고속버스는 면세. 2015년 4월 1일부터), 전세 버스, 택시 과세)

2) 국민 후생용역

- ① 의료 보건용역과 혈액
- ·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과세
- · 수의사가 제공하는 가축 등의 진료용역은 면세이나 애완동물 진료용역은 과세
- ②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면세이나 의약품 단순 판매는 과세
- ③ 정부의 인, 허가 받은 교육용역, 단 무도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 ④ 우표,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수집용 우표 과세)
- ⑤ 판매액이 200원 이하(20개비)인 담배 또는 특수 제조용 담배(영세율이 적용되는 것 제외)
- ⑥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여기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다음 '∋'과 '⊖'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한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보아 과세한다.
 - 주택의 연면적(지하층, 주차용, 주민공동시설 면적 제외)
 - 건물이 정착된 면적×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
- ⑦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면세 적용대상 거래 - 겸용 임대주택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과 면세되는 주택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 대범위는 다음에 의하여 판정한다.

구 분	건물부분	주택부수토지
주택면적 > 사업용건물 면적	전부 주택의 임대로 봄	주택부수토지 = Min[¬, □] ¬ 토지전체면적 □ Max[건물 연면적, 건물이 정착된 면적×5배(10배)]
주택면적≤사업용건물 면적	주택부분만 주택의 임대로 봄	주택부수토지 = Min[⑤, ⑥] ⑤ 주택안분토지 = 토지전체면적×주택연면적/건물연면적 ⑥ Max[주택의 연면적, 건물이 정착된 면적×(주택연면적/건물연면적)×5배(10배)]

[사례] 겸용임대주택 임대

- 1) (단층) 주택 30, 상가 20, 부수토지 600 도시지역 밖
- 2) (단층) 주택 20, 상가 30, 부수토지 600 도시지역 밖
- 3) (복층) 1층 상가 30, 2층 주택 30, 3층 주택 30, 부수토지 600 도시지역 내
- 4) (복층) 1층 상가 30, 2층 상가 30, 3층 주택 30, 부수토지 600 도시지역 내

면세 적용대상 거래

- 3) 문화 관련 재화 용역
- ① 도서, 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관보, 통신 및 방송(광고는 과세)
- ② 예술 창작품, 순수 예술 행사, 문화 행사, 비직업 운동 경기
- ③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의 입장
- 4) 부가가치 구성 요소 용역
- ① 토지의 공급(토지의 임대는 과세)
- ② 저술가, 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변호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 회계사는 과세 용역임)
- ③ 금융, 보험용역 (단, 금융, 보험용역중 보호예수, 신탁업중 부동산 및 실물자산 투자 금전신탁, 부동산신탁업중 관리, 처분, 분양관리신탁, 부동산 및 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보험계리, 연금계리용역은 과세)
- 5) 공적단체와의 거래
- ① 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으로 다음의 것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가 그 고유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학술, 기술 발전 위하여 학술,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무상, 실비로 공급하는 학술, 기술연구관련 재화 또는 용역
-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를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경내지 및 경내지 안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 공익을 목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이나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
-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 용역
- 비영리 교육재단이 외국인학교의 설립ㆍ경영 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학교시설 이용 등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용역
- ②국가, 지방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 용역(고속철도운송용역, 우정사업 조직의 소포우편물 방문접수 배달용역, 부동산임대업, 숙박업, 골프장 등 운영업 제공 재화 또는 용역 제외)
-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용역(유상공급은 과세)

수입재화에 대한 면세(부가법 27조)

-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도서 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학술연구단체·교육기관 및「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것
- 종교의식・자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외국으로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 ·이사·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에 의한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 ·여행자 휴대품·별송품과 우송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한
- ·수입하는 상품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전시회·품평회·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 ·조약 · 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 ·담배(국내 공급과 그 범위과 같음)
- ·그 밖의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조특법상 면세대상(조특법 106조)

- ① 국민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 용역의 공급
- ② 공장, 광산, 건설사업 현장의 직영 구내식당, 학교의 직영 또는 위탁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
- ③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 ④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정요건의 관리용역, 경비용역, 단 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초과(비수도권, 읍, 면 제외)는 과세전환, (2015년 개정)
- ⑤ 한국사학진흥재단 설립한 법인이 BTO방식으로 건설하여 국가와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기숙사의 시설관리 운영권 및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면세 포기

1) 면세포기의 개요

일정한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 면세사업자는 매출세액의 납부가 없는 대신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면세사업자보다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면세포기제도를 두고 있다.

2) 면세포기의 대상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면세를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면세포기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부가법 28조 1항).(부가령 57)

- ①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
- ②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면세포기의 절차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포기신고를 하고, 지체없이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부가령 57조). 이 때 관할세무 서장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며. 면세포기는 시기의 제한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4) 면세포기의 효력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다시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다시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면세적용신고서와 함께 발급 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

구 분	영세율	면 세
대 상	수출 등 외화 획득 재화, 용역	기초 생활 필수품 등
적용취지	수출 촉진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의한 이중과세 방지	부가세의 역진성 해소 부가가치 구성요소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면세정도	완전 면세 (전단계 매입세액이 영세율 사업자 단계에 서 환급되고 소비자에게 전가안됨)	불완전 면세 (전단계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자 단계에서 환급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전가)
과세대상여부	과세 대상	과세 대상 제외
사업자 여부	부가세법상 사업자	부가세법상 사업자 아님
의무이행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의무 이행해야 함. (대리납부의무 제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의 의무는 없으며 협력 의무가 있음 ①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제출 ② 대리 납부의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0 매입세액: 매출세액에서 공제 - 전액환급임.	매출세액 : 면세(과세대상 거래아님) 매입세액 : 손금(필요경비) 및 자산의 취득가액